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74호
2.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
3. 발의일자 : 2020. 2. 5.
4. 회부일자 : 2020. 2. 12.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목적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장애 학생의 불편 없는 국어 사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중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을 “국어발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조).

2.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20. 2. .~ 2.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5일 김인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74호로 발의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이라는 조례 제정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에게 장애학생의 편리한 국어 사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여 국어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1조는 현행 목적규정이 명시한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을 ‘국어발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의 목적규정을 국어 발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어기본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sup>1)</sup>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1) 문화체육관광부·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2021), 2017.2.10

대해 국어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점자 발전·보급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교육감에게 장애학생의 국어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타당한 조치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 2020.2.13.)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2)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2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